

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2024. 12. 26 조례 제216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에 따라 이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섭단체”란 이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이천시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신고)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이 교섭단체 명칭, 구성 연월일,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,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변경 보고)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

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보고해야 한다.

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,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등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
2. 교섭단체 연찬회, 간담회,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교섭단체 구성 신고서

교섭단체 명칭:

구성연월일:

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

성 명	직 인

소속 의원 명부

연 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	비고

년 월 일

대표의원 ○ ○ ○ (직인)

이천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 변경 보고

「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변경 사항

구 분	당 초	변 경
명칭 변경		
대표의원 변경		

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

성 명	직 인

소속 의원 명부

연 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	비고

년 월 일

대표의원 ○ ○ ○ (직인)

이천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교섭단체 소속의원 변동 보고

「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(정당변경)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변동보고

대 상 의 원		변 동 사 항			비 고
소속정당	성 명	일 자	내 용	사 유	
			탈당/입당		

정당변경 보고

의원성명	정 당 변 경 사 항			비 고
	기존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대표의원 (직 인)

이천시의회 의장 귀하